

제303회 임시회
2011. 9. 30.(금)

심 사 보 고 서

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정부시설 건립부지 무상대부 동의안



충청북도의회
건설소방위원회

심 사 보 고 서

-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내
정부시설 건립부지 무상대부 동의안

-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-
정부시설 건립부지 무상대부 동의안

심 사 보 고 서

2011. 9. 30(금)

건설소방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11년 9월 9일

다. 회부일자 : 2011년 9월 9일

라. 상정일자 : 2011년 9월 21일

(제30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바이오밸리추진단장 김광중)

가. 제안이유

-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시 정부시설 부지를 무상 공급하기로 제안함에 따라 해당 부지를 일반재산으로 용도변경하고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」 규정에 의거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무상대부 계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위 치 : 청원군 강외면 연제리 일원
- 면 적 : 77,977.7m² (679번지 44,897.7, 680번지 33,080)
- 건립시설 : 신약개발지원센터,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, 실험동물센터,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등 4개 센터
- 계약내용 : 20년 무상대부

3. 검토보고 요지

(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: 나 시 찬)

가. 무상대부 예정지의 공유재산 현황

구 분 \ 토 지	청원군 강외면 연제리 679	청원군 강외면 연제리 680
취득일자	2008. 12. 26	2008. 11. 13
취득금액	7,167,339,970원	5,056,571,940원
면 적	44,897.7m ²	33,080m ²
재산관리관	바이오밸리추진단 단지개발과	바이오밸리추진단 단지개발과
재산유형	일반재산	일반재산

나. 무상대부의 적법성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34조제1항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 35조 제1항3호의 규정에 의거 법령의 저촉사항은 없음

※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(대부료의 감면)제1항제3호

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"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

3.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·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

-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2010. 12. 27일 「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기업, 대학, 연구기관, 의료기관 등이 상호 협력하여 의료연구개발 및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함으로써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를 세계적인 의료연구개발 중심지로 육성하고 국내 의료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재단의 기금조성은 재단법인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
 - 중앙정부의 출연·보조금과 현물
 - 충청북도의 출연금과 현물
 - 그 밖에 공공기관과 연구개발기관 등의 출연금과 현물로 하고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감면조건을 충족함

다. 검토의견(종합)

-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정부시설 건립부지 무상대부 동의안을 검토한바
-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기반 구축을 위한 핵심·연구시설 건립부지를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」 규정에 의거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무상대부 계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

- 무상대부에 관한 관계법령 및 제반조건을 충족하고 있음.
- 다만 20년 장기간 무상대부에 따른 철저한 관리대책과 부지사용에 따른 별도의 특약 등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이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정부시설 건립부지 무상대부 동의안

-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-
정부시설 건립부지 무상대부 계획

□ 개 요

- 면 적 : 77,977.7m² (679번지 44,897.7, 680번지 33,080)
- 주요시설 : 신약개발지원센터,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, 실험동물센터,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
- 매 입 가 : 127억원(679번지 76, 680번지 51) ⇒ '10. 4 매입 완료

□ 무상 공급방안 ※ 제안사항 : 도에서 매입 이후 무상 공급

① 사용료 면제(행정재산)

-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·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면제 가능
- 보건복지부는 무상공급 약속 이행을 요구하며 사용 신청 거부

② 대부료 면제(일반재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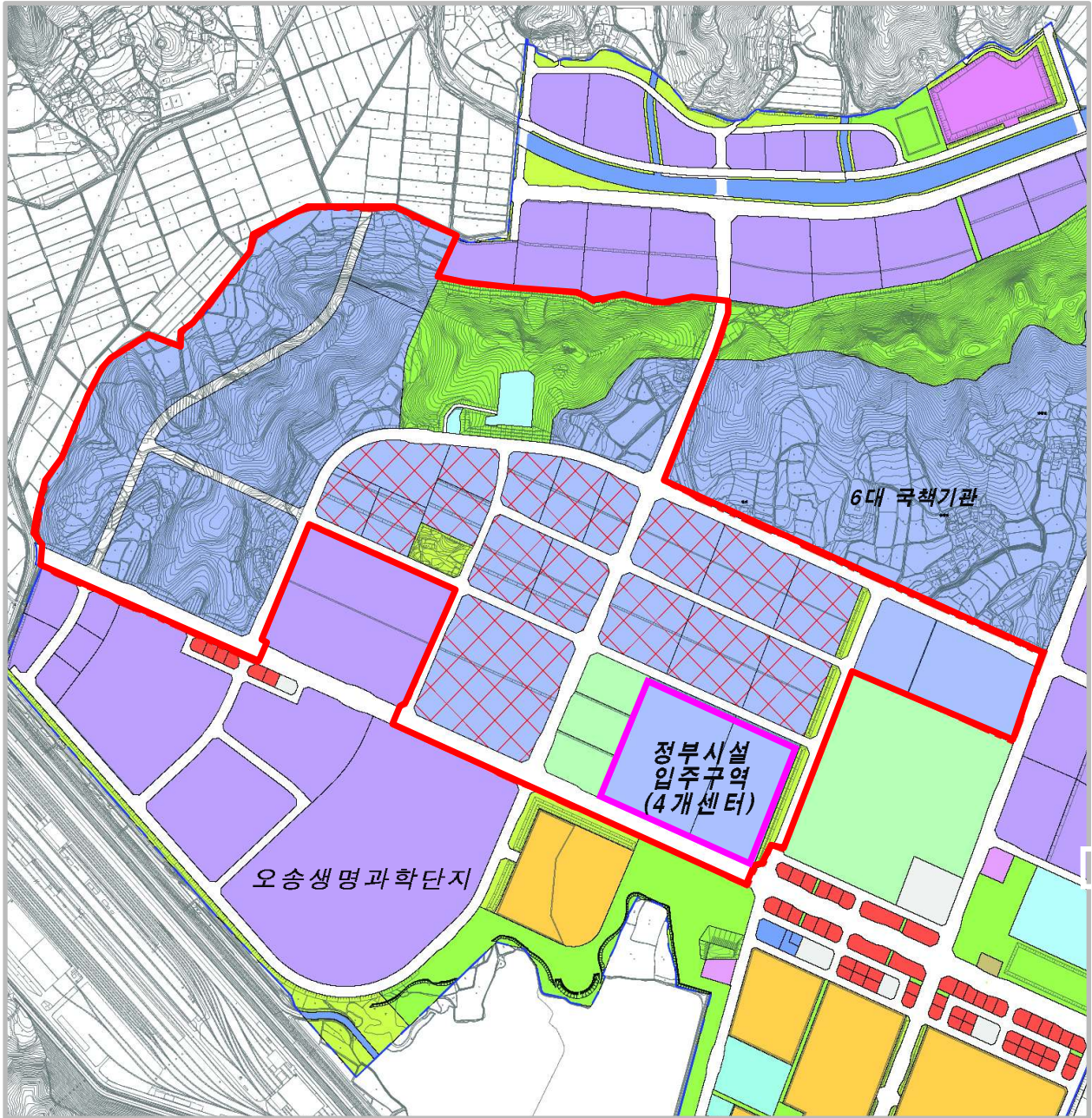
- 지방자치단체가 출자·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해 대부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대부료 면제 가능
-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충북도 등이 출연하여 설립('10. 12. 27)
⇒ 공유재산 용도변경(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, '11. 7. 27) 후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「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20년간 대부료를 면제

□ 조치계획

- 무상대부 지원계획(안)에 대한 도의회 동의를 받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무상대부 계약 체결
- 장기간에 걸쳐 권리가 행사되기 때문에 특별한 공부상 관리와 별도의 특약 등 안전장치 마련

□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위치도

- 위 치 : 청원군 강외면 연제리 일원
- 면 적 : 1,131,054.5m²(정부시설 부지 : 77,977.7m²)



침단의료복합단지 구역계	공동주택용지	보행자도로	배수지
오송생명과학단지 구역계	상업·업무용지	주차장	가압장
생산시설용지	공공지원시설	공원	폐수처리시설
연구시설용지	종교시설용지	녹지	폐기물처리시설
연구시설용지(외국인 투자지역)	학교용지	하천	
지원시설용지	도로	주유소	

관계법령 발췌

[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]

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

제18조(국·공유재산의 사용·수익·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국유재산법」·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·공유재산을 수익계약에 따라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사용·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국·공유재산을 사용·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그 기간은 「국유재산법」 제27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과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년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,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·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」 제24조제3항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
[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, 같은 법 시행령]
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	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<p>제19조(처분 등의 제한) ① 행정재산은 대부·매각·교환·양여·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,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제24조(사용료의 감면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·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<p>제34조(대부료의 감면)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.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	<p>제35조(대부료의 감면) ① 법 제34조 제1항제2호에서 "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3.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·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